#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72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김민전·김기웅·이성권

이인선 · 김용태 · 조정훈

박덕흠 • 박수민 • 정연욱

인요한 · 김석기 · 박상웅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지역산업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취업-정주' 체계 구축, 지역대학 중심 창업·산학 협력 강화 등에 힘쓰고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교육부는 대학지원 행·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이양하고 지역주도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대학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정책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2025년부터 17개 시·도에 전면 도입할 예정임.

그런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차질 없이 도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이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대학

·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 및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 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고 함(안 제5조 및 제6조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3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기본계획"을 "시·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으로. "기본계획"을 각각 "시· 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본계 획"을 "시·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정책목표"를 "시·도의 정책목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원확보"를 "시·도 의 재원확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행정적"을 "시·도의 행정 적"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 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도"를 "지방자 치단체의 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7호) 중 "채용촉진에" 를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 시·도"로, "기본계획의"를 "시·도 기본계획의"로, "대통령령으로"를 "조례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 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 9.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업·취업·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2 개 이상 시·도를 통합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도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교육부장관은 시·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등교육법」 제 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 당 시·도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 원 등을 위한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조의2(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 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 전략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4.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의3(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세부 지원전략 및 지난해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 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8조부터 제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13조제3항 중 "제8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를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를 "지역의 산업·사회와 연계하여 교육·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는"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장(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했 개 정 아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육성지원 시・도 기본계획의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 및 지 수립) ① 광역시장·특별자치 역인재의 육성 · 발전을 위하여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 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u>기본계획-----시·도 기본</u>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② 시·도 기본계획-----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 -----시·도의 정책목 본방향에 관한 사항 丑-----2. (현행과 같음) 2. (생략)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에 -----시·도의 재 관한 사항 원확보-----4.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u>시·도의\_행정적</u>-----을 위한 <u>행정적</u>·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u><신</u> 설>

-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 한 사항
- 6. (생략)
- 7. 지역인재에 대한 채용촉진에 관한 사항

<신 설>

8. (생략)

-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 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3조제1항에 따른 광역

- 5. 지방<u>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u> 지원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 관, 시·도 및 지역 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기방자치단체의 제도-----

- 7. (현행 제6호와 같음)
- 8. -----채용촉진 및 지역정주에-----
- 9. 외국인 유학생 유치·학업· 취업 · 정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10. (현행 제8호와 같음)
- ③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2개 이상 시·도를 통합 하여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확정된 기본 | ④ 시·도지사가 시·도 기본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지방대학의 의견을 들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 의-----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어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고등교육 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역혁 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한 시·도 기본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는 시·도---------시·도 기본계획 조례로----.

⑦ 교육부장관은 시·도 기본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방자 치단체 간 시·도 기본계획의 상호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고 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 · 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 도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 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

지사에게 시·도 기본계획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연도별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는 시·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지방대학 및 지 역인재 육성지원 등을 위한 시 ·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가 시·도 시행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등 교육법」 제59조의3에 따른 지 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 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해 당 연도 시·도 시행계획을 매 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추진 실적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 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 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 여야 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① 정부는 제5조에 따른 시·도 기본계획 과 제6조에 따른 시·도 시행 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 기본 계획을 반영하여 대학과 지역 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전략 (이하 "지원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전략은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

- 어 수립하며,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지원전략을 변 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원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 2.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3. 지원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
- 4. 시·도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한 행정 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정부는 지원전략의 수립을

<신 설>

위하여 지방대학,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 련 계획이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전략의 내용,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원 전략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연도별 대학·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이하 "세부 지 원전략"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세부 지원전략 및 지난해의 세부 지원전략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종합·조정

 제3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제8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지

 방대학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

하여 「고등교육법」 제59조의 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 수립과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 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 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삭 제></u>

<u><삭 제></u>

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점검에 관한 사항
-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지

   역인재의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 대학의 지정에 관한 사항
- 5.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와 관련된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6.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관한 사항
- 7.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 정·변경·지정해제 및 특화 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 재 육성지원에 관한 중요 사 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 치는 사항

제8조의2(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관리 분과위원회) ① 제8 조제2항제7호에 따른 고등교육 혁신특화지역의 지정·변경· 지정해제 및 특화지역계획의 확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 관리 분과위원회(이하 "특화지 역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이 경우 특화지역 분과위원 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 ② 특화지역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 ④ 그 밖에 특화지역 분과위원 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삭 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되 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된다.
  -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 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 무원
  - 2. 위원장이 위촉하는 광역지방 자치단체의 장
  - 3.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 장이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 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 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 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② (생략)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 조제2항제3호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역인재의 채용실 적이 부진한 공공기관 및 기업 에 대하여 그 채용실적을 공개 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 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생략)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방자 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 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지 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방대학을 특성화 지 방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고등교육법」 제5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
원위원회의
<u>.</u>
· (원레기 기 ()

④ (현행과 같음)

등) ① -----지역의 산업ㆍ사회와 연계하여 교육ㆍ 연구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발 전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 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5 9조의4에 따른 대학·지역 동 반성장 지원위원회의-----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대학이 <u>특</u> 성화 분야를 육성하는 데 필요 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6장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
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
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

2	<u>관계</u>	중앙형	행정기관	<u> 원의 장</u> -	
		· <u>지역</u>	발전을	선도	.하
<u>는</u> -					
3	• ④ (	현행과	같음)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지방 대학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법」 제59조의7에 따른 규제특 례를 적용할 수 있다.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삭 제><삭 제>

- 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각 지역의 협업체계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소속으로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기관,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이하 "지역협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④ 지역협업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라 한다)은 해당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고 등교육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도 공동위원 장이 될 수 있다.
- 5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협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지 역협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지 역협업위원회의 장이 둘 이상 일 경우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과 개편 및 교육과정 개선 등 고 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은 특화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계획(이하 "특화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 2. 특화지역 발전의 기본방향
- 3. 특화지역의 고등교육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와 적 용범위

- 4.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고등교육기관
- 5. 그 밖에 특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공동 위원장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과 제6항에서 같다)은 특화 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화지역계획을 공고하고 주민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 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지역협업위원 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 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특화 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특화지역계획을 확정 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 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 육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특화지역을 지정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장은 해당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① 그 밖에 특화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 정의 효과 등) ① 특화지역으 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 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등을 적용한다.

- ② 특화지역계획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특화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한정한다.

제24조(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의 변경·지정해제 등) ① 교육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역협 업위원회의 장의 신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 우 교육부장관이 직접 특화지 역계획 및 특화지역의 지정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관할 지역협 업위원회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 지정의 변경에 관 하여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특 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 접 또는 관할 지역협업위원회 의 장의 신청(지역협업위원회 의 장이 둘 이상일 경우 공동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1. 특화지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 2. 특화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 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과의 협의는 교육부장 관이 직접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계획 및 특화지역을 변경하거나 특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역협업위원회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특화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특화 지역에서의 규제특례는 적용이 중지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규제특례의 적용중지에 따라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적 용이 매우 곤란하거나 실익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화지역 분과위원회 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규 제특례의 적용을 유지할 수 있 다.
- ① 그 밖에 특화지역계획·특화지역의 변경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